|  |  |  |
| --- | --- | --- |
| **외상투자 영리성 양로기구 설립 관련사항에 관한 상무부·민정부의 공고**우리 나라 양로 서비스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시키고 사회 서비스업의 대외개방을 확대하며 <전면적 개혁 심화의 약간 중대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 및 <양로 서비스업 발전 가속화에 관한 국무원의 약간 의견>(국발[2013]35호)을 진일보 관철하기 위하여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노년인권익보장법> 및 <양로기구 설립 허가방법> 등 관련 법률, 법규와 부문규장에 근거하여 외국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하 '외국투자자'로 약칭)이 중국에 영리성 양로기구를 설립하여 양로 서비스를 취급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외국투자자가 중국에서 단독투자 또는 중국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과 합자, 합작하여 영리성 양로기구를 설립·운영하는 것을 격려한다.2. 외상투자 영리성 양로기구는 관련 법률, 법규와 규장을 준수하여야 하고 사회 서비스 제공을 취지로 하며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준법경영해야 한다. 외상투자 영리성 양로기구의 합법적인 경영활동과 출자자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3. 영리성 양로기구를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투자자는 양로기구 설립 예정지의 성급 상무주관부서(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计划单列市) 및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의 상무주관부서)에 외상투자기업 설립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설립 신청서. (2) 상황설명서(장소, 안전, 의료·간호 등 내용 포함).(3) 합자·합작계약, 정관(외자기업은 정관만 제출). (4) 이사회 구성원 명단 및 이사 위임파견서.(5) 상호예비등기서.(6) 외국투자자 또는 실제 지배권자의 종업경력 설명서 및 증명서류, 또는 양로 서비스업 관리 경험이 있는 경영진 초빙에 관한 설명서류.(7) 법률, 법규, 규장의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기타 서류.4.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승인 또는 기각의 서면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을 결정한 경우 경영범위 란에 "양로기구 설립허가증 취득 후 경영"이 기재된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를 발급하고, 기각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5.외국투자자는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 획득 후 1개월 내에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외상투자기업 등록·등기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6. 외상투자기업은 등록·등기 수속을 마친 후 <양로기구 설립 허가방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양로기구 설립허가증을 신청 및 취득해야 한다. 법에 따라 위의 허가 및 등기 수속을 이행하기 전, 외상투자 영리성 양로기구 또는 외국투자자는 양로 서비스 업무를 취급할 수 없으며 그 어떠한 명목으로도 비용을 수취하거나 노년인을 입원시켜서는 아니된다.7. 외국투자자가 사회를 상대로 경영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영 양로기구의 기업화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한다. 국영 양로기구의 기업화 구조조정에 참여한 외국투자자는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직원 이익 보호와 국유자산 가치 유지·증대 등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해야 한다. 8. 외상투자 영리성 양로기구는 양로 서비스와 연관성이 있는 국내투자를 진행할 수 있으며, 외국투자자가 양로기구 경영을 규모화·체인화하고 양로기구 우수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을 격려한다. 9. 외상투자 영리성 양로기구는 국내자본이 투자하여 설립한 영리성 양로기구와 동등한 조세 등 우대정책 및 행정공과금 감면정책을 적용받는다. 10. 각 지방은 양로시설 건설용 부지의 용도, 용적율 등 사용조건을 변경시키는 방식을 통해 설립하는 외상투자 부동산기업을 승인해서는 아니된다. 외상투자 영리성 양로기구는 주택저당양로 등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11. 외상투자 영리성 양로기구의 업무범위에 의료위생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 관련 정책의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12.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외상투자 영리성 양로기구 통계 업무를 강화해야 하고 비준증서 발급 시 업종 유형은 "노년인·장애인 양호 서비스"(국민경제 업종분류 코드 8414 )로 한다. 13. 이 공고에 따라 설립된 외상투자 영리성 양로기구는 제때에 외상투자기업 연합연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14.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타이완 지역의 투자자가 영리성 양로기구 설립 시 이 공고의 요구사항을 참조하여 집행하고, 이 공고가 시행되기 전 공표된 규정이 이 공고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 공고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15. 각 지방 상무, 민정 주관부서는 이 공고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제때에 상무부, 민정부와 연락해야 한다.담당자: 상무부 외국투자 관리사 쑨샤오위(孫笑宇)전화번호: 010-65197327 팩스번호: 010-65197322담당자: 민정부 사회복지 및 자선사업 촉진사 장샤오펑(張曉峰)전화번호: 010-58123258 팩스번호: 010-58123256상무부민정부2014년 11월 24일 |  | **商务部、民政部关于外商投资设立营利性养老机构有关事项的公告**　　为推动我国养老服务业健康发展，推进社会服务业对外开放，进一步落实《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和《国务院关于加快发展养老服务业的若干意见》（国发[2013]35号），根据《中外合资经营企业法》、《中外合作经营企业法》、《外资企业法》、《老年人权益保障法》以及《养老机构设立许可办法》等相关法律法规和部门规章，现就外国公司、企业和其他经济组织或个人（以下简称外国投资者）在华设立营利性养老机构从事养老服务等有关事项公告如下：　　一、鼓励外国投资者在华独资或与中国公司、企业和其他经济组织合资、合作举办营利性养老机构。　　二、外商投资营利性养老机构应遵守有关法律、法规和规章，以提供社会服务为宗旨，依法纳税，合规经营，其合法经营活动以及出资方的合法权益受法律保护。　　三、外国投资者设立营利性养老机构，应向拟设立机构所在地省级商务主管部门（指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及新疆生产建设兵团商务主管部门）提交设立外商投资企业的申请材料：（一）设立申请书；（二）情况说明（包括场地、安全、医护等内容）；　　（三）合同、章程（外资企业只报送章程）；　　（四）董事会成员名单及董事委派书；（五）名称预先核准通知书；（六）外国投资者或实际控制人从业经验的说明及证明文件，或聘用具有养老服务业务管理经验的管理团队的说明文件；（七）依照法律、法规、规章规定，需要提供的其他材料。　　四、省级商务主管部门应当在受理之日起20天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书面决定；予以批准的，颁发《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并在经营范围中加注“凭养老机构设立许可证经营”；不予批准的，说明理由。　　五、外国投资者应在获得《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1个月内，到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外商投资企业注册登记手续。　　六、外商投资企业注册登记后，应当按照《养老机构设立许可办法》等有关规定，依法申请并取得养老机构设立许可证。获得上述许可和依法批准登记前，外商投资营利性养老机构或外国投资者不得开展养老服务业务，不得以任何名义收取费用、收住老年人。 　　七、鼓励外国投资者参与专门面向社会提供经营性服务的公办养老机构的企业化改制，改制过程中应妥善处理职工利益维护和国有资产保值增值等问题。　　八、外商投资营利性养老机构可以从事与养老服务有关的境内投资，鼓励外国投资者发展养老机构规模化、连锁化经营，开发优质养老机构品牌。　　九、外商投资营利性养老机构与国内资本投资举办的营利性养老机构享有同等的税收等优惠政策和行政事业性收费减免政策。　　十、各地不得批准通过改变养老设施建设用地用途、容积率等使用条件设立的外商投资房地产企业。外商投资营利性养老机构不得经营住宅贴现养老等业务。　　十一、外商投资营利性养老机构业务范围中包括医疗卫生服务的，应按有关政策规定履行报批手续。　　十二、省级商务主管部门应加强外商投资营利性养老机构的统计工作，发放批准证书时，行业分类选择“老年人、残疾人养护服务”（国民经济行业分类第8414款）。　　十三、依照本公告成立的外商投资营利性养老机构应按时参加外商投资企业联合年报。　　十四、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的投资者举办营利性养老机构参照本公告要求，此前规定与本通知内容不符的，以本公告为准。　　十五、各地商务、民政主管部门在执行中如遇问题，请及时与商务部、民政部联系。　　联系人：商务部外国投资管理司 孙笑宇电　话：010-65197327 传 真：010-65197322　　联系人：民政部社会福利和慈善事业促进司 张晓峰电　话：010-58123258 传 真：010-58123256商务部民政部2014年11月24日 |